거창군 Geochang County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765호 2020. 8. 26.(수)

거창사랑거창

선결	기관의 장

훈 령

제441호 거창군 일상감사규정 전부개정규정 ····· 2

고 시

제2020-96호 도로명주소 고시 ····· 14

공 고

제2020-1109호 공시송달공고 ····· 16
제2020-1111호「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19
제2020-1118호「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28
제2020-1124호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계획 ····· 46
제2020-1128호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196호선 주차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 60
보건소 공고 제2020-19호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 61

회 람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일상감사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 창 군 수

서 명 생 략

2020년 8월 26일

거창군 훈령 제441호

거창군 일상감사규정 전부개정규정

거창군 일상감사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일상감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부서(이하 “집행부서”라 한다)에 적용한다.

1. 거창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
2. 거창군 의회사무과

제3조(감사대상) 일상감사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경상남도 계약

심사업무 처리규칙」 및 「거창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계약심사 대상 및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감사의 시기) ①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감사의 의뢰 전에 일상감사 대상서류 사본을 제출받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

제5조(감사의 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요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감사의 실시)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 또는 담당자에게 자료의 제출·출석·답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내용의 타당성(경제성·효과성·효율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7.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8. 그 밖에 확인 점검이 필요한 사항

제7조(감사의 결과) ①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일상감사 대상사업인 경우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한 번만 5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만 15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에 대해서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감사의 효력) ①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업무 집행부서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면책되지 아니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이 이미 진행된 사항이라도 일상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집행정지 등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의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증명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재검토 요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①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요청사항의 처리 및 결과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결과 등을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일상감사 결과의 이해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상감사 대상

분 야		범 위
1.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가. 군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나. 지방재정투자 심사대상인 국비·도비 보조사업 (다만, 단순히 보조금만 교부하는 사업은 제외) 다. 민간보조사업, 주요사업 등의 방침 결정사항 라. 그밖에 군수의 중대한 결정이 필요한 사업
2.계약 업무	가. 공사	1) 종합건설공사: 추정금액 200백만원 이상 2) 전문건설공사, 전기·소방·통신공사: 추정금액 100백만원 이상 3) 설계변경: 일상감사대상사업으로 일상감사 후 누적 설계변경 금액이 총액의 2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나. 용역	1) 1건당 추정금액 30백만원 이상
3. 그 밖의 업무		가. 주택, 건축, 위생 등 군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및 주요 민원사항으로 집행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다수인 민원발생 군민으로부터 감사청구가 있는 경우 등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외대상		가. 조달발주(조달구매)사업 나.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감사가 어려운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라. 감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 구매(예/상품권, 유류, 종량제봉투, 정부단가고시물품, 식재료를 포함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구매 등) 마. 예술성, 창작성이 필요한 작품, 특정인의 작품 등 전문 식견이나 기술이 요구되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 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일 상 감 사 요 청 서

수　　신:　　최종결재자:

주관부서:　　요청자:　　㊞

요청일자:

□ 건명:

1. 요지

2. 주요내용

3. 처리의견

4. 관련법규

〔별지 제2호서식〕

일 상 감 사 의 견 서

주관부서:　　최종결재자:

건　　명:　　접수일자:

요청일자:

□ 검토 및 감사의견

○ 내용

○ 의견

기획예산담당관

〔별지 제3호서식〕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수신: 기획예산담당관　　20 . . .

발신:　　요청접수번호:

주관부서:　　과　　감사의견회보:

□ 건명

조치내용

〔별지 제4호서식〕

연번	분류	접수일	처리일	건명	업무 요지	감사 의견	사업비 (천원)	담당 부서	담당	요구 내용	조치 일자	사업비 (천원)	
												증	감

거창군 일상감사규정 전부개정계획

Ⅰ 추진배경

○ 물가상승 등 여건변화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금액 조정 필요

○ 모호한 표현등의 명확화

Ⅱ 대상법규 및 규정

○ 「거창군 일상감사규정」

Ⅲ 추진절차

○ 방침결정 → 발령 및 시행

Ⅳ 주요개정사항

1. 일상감사 기간 조정

가. 개정사항 : 현행 3일 ⇒ 개정안 5일

나. 개정사유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요청 증가

○ 특정시기에 일상감사의 요청이 집중되어 면밀한 검토에 어려움이 있음

※ 일상감사 현황

구분	합계		용역		공사		물품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5	155	39,251	31	2,436	117	35,453	7	1,362	
2016	237	25,707	47	3,74	180	20,879	10	994	
2017	254	23,428	44	2,361	206	20,809	4	258	
2018	278	26,695	43	2,151	228	24,173	7	371	
2019	354	34,048	52	2,513	298	31,275	4	260	
2020	249	23,156	42	2,108	207	21,254	-	-	상반기

2. 일상감사 대상조정

가. 개정사항

현 행	개 정(안)
❍ 용역 - 1건당 총액 3천만원 이상 ❍ 시설공사 - 1건당 총액 1억원 이상 - 전문공사 7천만원 이상 - 전기・통신・소방 공사 5천만원 이상 -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공사 4천만원 이상 ❍ 주요시설 기자재 구입(물품) - 1건당 총액 3천만원 이상(조달구입 제외)	❍ 용역 -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 시설공사 - 종합공사 추정금액 2억원 이상 - 전문공사, 전기・통신・소방 공사 1억원 이상 -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공사 ----- 삭제 ❍ 주요시설 기자재 구입 ------- 삭제

나. 개정사유

❍ 전문공사와 전기・통신・소방공사의 대상금액 일원화

❍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공사에 대하여 본청 기준으로 일원화

❍ 물품의 경우 계약심사 대상금액(1천만원)과 중복되어 일상감사 불필요

3. 모호한 표현 등의 명확화

가. 개정사유

❍ 일상감사 요청부서에 대한 명시 필요

❍ 일상감사 대상기관 및 적용대상이 모호하여 구체적인 명시 필요

❍ 일상감사의 실시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필요

❍ 일상감사 처리사항에 대하여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입력 등 관리방안 명시 필요

나. 개정사항

❍ 일상감사 용어의 정의 명확화

- 일상감사 실시부서를 감사부서의 장으로 규정
- 일상감사 요청부서를 집행부서의 장으로 규정

❍ 계약심사와의 관계 등 적용대상에 대한 명확화

- 계약심사를 받은 경우 일상감사 제외
- 일상감사의 대상기관 및 부서 명확화

❍ 일상감사의 실시방법 명확화

- 자료제출 요구 등 실시방법 명확화
- 일상감사의 중점사항 등 명시

❍ 일상감사 결과의 처리방법 명확화
- 일상감사 결과의 처리기한 명시
-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해당부서의 처리방법 명시

❍ 일상감사 요청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의 명확화
- 일상감사 대장 서식등재
-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입력·관리 방안 명시

❍ 일상감사 제외대상 명확화
- 정부고시단가 물품 등 일상감사 제외대상 명시

거창군 고시 제2020 - 96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8. 26.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1972-80 등 1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에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일련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창선리 산1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1972-80	20090702	20200826	지명(덕유산+월성계곡) 활용	부여
2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대동리 799-1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황마로 1307	20090702	20200826	옛 노선명(황곡+마리면간) 활용	부여
3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19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송계로 1566-234	20091228	20200826	송계사를 지나 고제면으로 가는 길임을 반영한 도로	부여
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728-1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개화3길 27-30	20091228	20200826	칡의 꽃이 핀다고 하여 유래된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세번째 도로	부여
5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214-3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노루고개길 144	20090401	20200826	노루고개길이라는 옛지명 반영	부여
6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1564-1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상감악길 447-110	20090401	20200826	감악산 기슭에 자리 잡은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부여
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988-1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소만3길 36-20	20090401	20200826	마을 북동쪽 모래둑걸 남쪽에서 아월천 서쪽일때까지의 논들 이름이 반영된 세번째 도로	부여
8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산158-1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아주3길 25-50	20091228	20200826	고려말 거제현의 속현인 아주현에서 마을이름이 생겼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세번째 도로	부여
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773, 77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3길 194-53	20090401	20200826	장팔길의 시작점으로 부터 분기되는 세번째 도로	부여
10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297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치내길 78-42	20090401	20200826	갈계의 옛지명이 반영된 도로	부여

거창군 공고 제2020 - 1109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공 고 근 거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2.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함양-합천) 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4. 사업의 인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83호(도로구역 결정 : 2017.06.19)
5. 송달할 내용 : 동 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 요청 및 수용예정통보
6. 공 고 사 유 :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함양-합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나, 미등기·주소 및 거소의 불명으로 협의할 수 없어 공시송달 공고 후 공고기간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을 시에는 공시송달로서 협의에 갈음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보상금 공탁 후 소유권 이전을 하고자 함.
7. 공시송달토지 손실보상협의 내역 : 별첨 공시송달내역 참조
8. 계약체결(보상협의)기한 : 게시일로부터 14일간
9. 계약체결장소 : 박재용 법무사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18(☎055-945-6700)]
10. 보상금 지급절차 및 방법 : 소유권 이전 후 보상금액 계좌입금
11.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o 보통예금통장,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o 인감증명서 1통 (부동산매도용 - 매수자 : 국토교통부)
    - o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1통

2020년 8월 24일

거 창 군 수

□공시송달 내역

연번	소재지	원		지목	편입		보상금액(원)		소유자 또는 관계인			공시송달 사유
		지번	지적(㎡)		지번	지적(㎡)	단가	금액	지분	성명	등기부등본상 주소	
1	거창군 남상면 둔동리	233	974	임	233-2	366	7,450	454,450	1/6	이선석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566	소재불명
	거창군 남상면 둔동리	233	974	임	233-2	366	7,450	454,450	1/6	이영기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506	소재불명
	거창군 남상면 둔동리	233	974	임	233-2	366	7,450	454,450	1/6	이종호	거창군 거창읍 개화1길 111-28	소재불명
	거창군 남상면 둔동리	233	974	임	233-2	366	7,450	454,450	1/6	이판기	거창군 거창읍 개화2길 4	소재불명
2	거창군 남상면 둔동리	238	1,002	전	238-2	508	28,000	2,370,660	1/6	이선석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566	소재불명
	거창군 남상면 둔동리	238	1,002	전	238-2	508	28,000	2,370,660	1/6	이영기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506	소재불명
	거창군 남상면 둔동리	238	1,002	전	238-2	508	28,000	2,370,660	1/6	이종호	거창군 거창읍 개화1길 111-28	소재불명
	거창군 남상면 둔동리	238	1,002	전	238-2	508	28,000	2,370,660	1/6	이판기	거창군 거창읍 개화2길 4	소재불명
3	거창군 남상면 둔동리	295-2	261	구	295-2	261	18,000	4,698,000		김병춘	미등기	미등기 소재불명
4	거창군 남상면 둔동리	297	2,760	임	297	2,760	24,000	66,240,000		김병춘	미등기	미등기 소재불명
5	거창군 남상면 둔동리	297-2	331	임	297-2	331	25,000	8,275,000		김병춘	미등기	미등기 소재불명

6	거창군 남상면 둔동리	290	2,235	임	290-1	2,064	9,150	18,885,600		최석주	미등기	미등기 소재불명
7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1381-2	351	답	1381-3	30	20,000	600,000		김윤회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561	미등기 소재불명
8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512	46	임	512	46	6,750	310,500		김영호	미등기	미등기 소재불명
9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518	43	천	518	43	18,000	774,000		손승진	산청군 금서면 특리	미등기 소재불명
10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526	55	답	526	55	22,000	1,210,000		이병문	거창군 신원면 내세동	미등기 소재불명
11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526-1	105	도	526-1	105	22,000	2,310,000		이병문	거창군 신원면 내세동	미등기 소재불명
12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526-2	15	도	526-2	15	10,000	150,000		이병문	거창군 신원면 내세동	미등기 소재불명
13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631-1	12	도	631-1	12	32,000	384,000		이형순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650	소재불명
14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681	73	천	681	73	34,000	2,482,000		최성수	미등기	미등기 소재불명
15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816	93	전	816	93	30,500	2,836,500		이수윤	미등기	미등기 소재불명
16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816-2	23	전	816-2	23	30,500	701,500		이수윤	미등기	미등기 소재불명

거창군 공고 제2020-1111호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준 설정 및 지원근거 마련하고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통해 업무능률 및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1) 거창군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적용범위(안 제3조)

1) 후생복지제도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

2) 후생복지제도 적용 배제 및 제한(휴직, 파견, 정직, 직위해제 등)

3) 군의회 의원,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도 적용

다. 맞춤형 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사업의 운영 및 시행 (안 제5조 내지 제7조)

1) 맞춤형 복지제도의 구성항목

2) 근무연수, 가족사항, 징계 여부 등 고려 점수화한 복지점수 부여

3)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체력단련실, 콘도·휴양소 등 후생복지시설 운영

4) 장기근속시 국외 시찰, 직장 동호회, 장제용품, 건강검진비, 단체보험 등 후생복지사업 시행

라.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회의 등 (안 제8조 내지 제10조)

1) 맞춤형 복지제도, 후생시설 운영 및 사업 시행 등 심의를 위해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2) 위원회 9명 이내로, 직급별 대표자, 노조 추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으로 구성

마. 업무의 위탁 (안 제11조)

1)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시행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 할 수 있음.

4. 예고기간 : 2020. 8. 21.(금) ~ 9. 10.(목)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정과)

라. 전화 055-940-3192, 팩스 055-940-3179, 이메일 sykim6919@korea.kr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행정과 서무담당【☎(055)940-31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소속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 기관 및 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 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을 제외한 휴직 중인 공무원
   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나.「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제4호 · 제5호에 따른 휴직
2. 국외에 파견 · 교육훈련 중인 공무원
3. 정직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된 소속공무원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소속공무원

③ 군수는 군의회 의원,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험 등으로 구성되는 항목
2. 자율항목: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으로 구성되는 항목

③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상황,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점수화한 복지점수를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④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부여된 복지점수는 해당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2.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등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콘도, 휴양소 등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기근속 공무원 등 소속공무원에 대한 국외 시찰 지원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장제용품 등 장제비 지원
4. 소속공무원의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5. 소속공무원의 단체보장보험 가입 지원
6. 소속공무원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 지원
7. 임산부 및 허리질환자 등을 위한 맞춤형 의자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직급별 대표성을 가진 소속공무원
2.「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3.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맞춤형 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 및 시행 중인 후생복지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884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5. 5. 18.>

[전문개정 2008. 12. 31.]

부칙 <제16884호, 2020. 1.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6,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5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행하는 5급 공무원 공개임용경쟁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충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되는 고충 상담 신청 또는 심사 청구부터 적용한다.

제4조(퇴직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공고 제2020-1118호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사회적경제를 육성·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사회적경제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3.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의와 범위를 정함. (안 제2조)
나.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를 정함. (안 제4조)
다.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1)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구체화
라.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신설함. (안 제12조 ~ 제16조)
  1)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3조)
  2)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4조)

3) 사회적경제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5조, 제16조)

마. 거창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함.(안 제 19조)

4. 예고기간 : 2020. 8. 21.(금) ~ 9. 10.(목)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경제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경제교통과)

라. 전화 055-940-3352, 팩스 055-940-3349, 이메일 hyecc@korea.kr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공동체담당【☎(055)940-33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0-

제출일자	2020. 8. .
제 출 자	경제교통과장

1. 제안 이유

가. 기존조례를 폐지하고, 법·제도 개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회경제적 조직을 아우르는 조례 필요성 대두

나. 거창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 지원하기 위함.

다. 사회적경제 관련 용어정의 및 범위 지정

라.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과 시책 발굴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의와 범위를 정함. (안 제2조)

나.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를 정함. (안 제4조)

다.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1)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구체화

라.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신설함. (안 제12조 ~ 제16조)

1)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3조)

2)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4조)

3) 사회적경제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5조, 제16조)

마. 거창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함. (안 제 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9조, 제22조,「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비영리단체지원법」제2조, 「양성병등 기본법」제21조,「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나) 예고결과

2) 규제심사 :

3)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 :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과 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각 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과 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바.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등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기업·단체들이 상호부조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연계망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제2호 및 제3호를 포괄하거나 각각의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조직의 주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 수립 및 지원

제6조(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와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비 등 지원) 군수는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임대할 수 있다.

제8조(경영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교육·훈련)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확산 등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2.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사업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 사회적경제조직 판로 확대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우선구매 등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2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거창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육성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경제교통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사회적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6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거창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9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시책 발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설립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대한 지원
4.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협력 지원
5. 사회적경제조직의 교육 및 경영 활동 지원
6.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지원센터 운영 위탁)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1조(포상)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업, 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지도·감독)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지원 받은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거창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거창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지원 등 행정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거창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수립된 지원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시·도에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6. 8.]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4. 17., 2019. 8. 27., 2020. 1. 29.>

9.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1. "조합"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2. "연합회"란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를 말한다.
3. "전국연합회"란 조합과 연합회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5. 29.>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

1.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0. 11. 20.]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를 육성·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과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협동조합 기본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개정 2019. 3. 28.>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성장,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와 시장의 형성,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얻게 되는 수익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활동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2장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

제7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기업간의 상호협력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사회적경제정책의 현황과 전망 분석
8.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창출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설비 등 지원) 도지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다.

제10조(경영지원 등)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사회적경제기업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구축 사업
2. 사회적경제 인재 발굴 육성사업
3.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 사회적경제 가치 확대 사업
5.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및 자립지원 사업
6.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개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상남도(이하 “도”라고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3장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4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와 시·군, 유관기관, 사회적경제기업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개정 2019. 3. 28.>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3. 28.>

② 공동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와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된다. <개정 2019. 3. 28.>

③ 당연직 위원은 도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실·국·본부장과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8.>

1.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적경제 관련 중간지원조직 대표
3. 사회적경제기업 단체의 대표
4. 경상남도의회 의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도 소속공무원과 사회적경제 기업 등의 임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9. 3. 28.>

④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8.>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 3. 28.>

제1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공익신고자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8조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9조의2(사회적경제실무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신설 2019. 3. 28.>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에 대한 사전 연구·검토 및 심의·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사회적경제실무추진위원회(이하 “실무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되,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실무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경상남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20조(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과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3.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4.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심사, 감독 및 평가 지원
5.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7. 사회적경제기업 실태조사
8.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교육
9. 경영·노무·회계·마케팅·교육·홍보 등 경영활동 지원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과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1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 출자·출연기관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민간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장 보 칙

제22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3조(표창)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및「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는 본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또는「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조례」에 따라 행한 지정 및 지원 등 행정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9.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공고 제2020-1124호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거창군수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계획

1. 개정 이유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에 청소년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
   ○ 대관 시 별표 기준 명확화로 대관의 효율적 관리

2. 주요내용

유형	구분	내 용	비 고
신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 이용 우선권 부여	○ 청소년활동시설에 청소년 이용의 우선권 부여	제10조(사용 및 사용제한) 제4항 신설
변경	청소년수련관 대관시설 명칭 현행화	○ 실내집회장 → 대강당(한마당터) ○ 세미나실 → 소강당(참배움터) ○ 프로그램실 → 강의실(한배움터1, 2) ○ 체육활동장 삭제(~~2,000원~~)	별표2-1
	월성청소년수련원 사용기준 명확화	○ 수련활동지도료 삭제 ○ 부가세 별도 표기	별표2-3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체험료 정비	○ 각 체험 구분 삭제 → 체험 기구당으로 표기	별표2-3
	국민여가캠핑장 성수기 및 기준인원 기준 변경	○ 성수기(7.15.~8.20. → 7.20.~8.20.) ○ 실별 기준인원, 최대인원 명시 ○ 부가세 별도 표기	별표2-3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 감면율 명확화	○ 감면대상 범위 모두 열거 및 증명서류 확인방법 명확화	별표 3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시간 명확화	○ 반환기준 시간 변경(18시 → 00시)	별표 4

3. 개정 규칙안: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인구교육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 거창군 인구교육과
   ○ 우편번호:51030, 전화: 055-940-8702, 팩스: 055-940-8709
   이메일: yangda00@korea.kr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문 추가 게재: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0 ~

제출연월일	2020. 8. .
제 출 자	인구교육과장

1. 개정이유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에 청소년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

❍ 대관 시 별표 기준 명확화로 대관의 효율적 관리

2. 주요내용

유형	구분	내 용	비 고
신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 이용 우선권 부여	○ 청소년활동시설에 청소년 이용의 우선권 부여	제10조(사용 및 사용제한) 제4항 신설
변경	청소년수련관 대관시설 명칭 현행화	○ 실내집회장→대강당(한마당터) ○ 세미나실→소강당(참배움터) ○ 프로그램실→강의실(한배움터1,2) ○ 체육활동장 삭제(2,000원)	별표2-1
	월성청소년수련원 사용기준 명확화	○ 수련활동지도료 삭제 ○ 부가세 별도 표기	별표2-3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체험료 정비	○ 각 체험 구분 삭제→체험 기구당으로 표기	별표2-3
	국민여가캠핑장 성수기 및 기준인원 기준 변경	○ 성수기(7.15.~8.20. → 7.20.~8.20.) ○ 실별 기준인원, 최대인원 명시 ○ 부가세 별도 표기	별표2-3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 감면율 명확화	○ 감면대상 범위 모두 열거 및 증명서류 확인방법 명확화	별표 3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시간 명확화	○ 반환기준 시간 변경(18시→00시)	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8. 24. ~ 2020. 9. 12.

나) 예고결과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의뢰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사용 및 사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1. 청소년 및 일반인 2. 국가 및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단체 3. 그 밖에 청소년활동시설의 사용 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활동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우려되거나 초래한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감염병질환자나 그 밖에 이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군수 또는 수탁자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신 설>	**제10조(사용 및 사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1. 청소년 및 일반인 2. 국가 및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단체 3. 그 밖에 청소년활동시설의 사용 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활동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우려되거나 초래한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감염병질환자나 그 밖에 이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군수 또는 수탁자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④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별표 2]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1. 거창군 청소년수련관(일반인 기준)

시설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가. ~~실내집회장~~ 대강당 (한마당터)	1회 3시간	50,000원	1) 1시간 초과 시 10,000원 가산 2) 냉난방기 사용 시 20,000원 추가 부담 3)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은 요금의 30퍼센트 가산
나. ~~세미나실~~ 소강당 (참배움터)	1회 2시간	20,000원	
다. ~~프로그램실~~ 강의실 (한배움터1, 2)	1회 2시간	10,000원	
~~④ 체육활동장~~	~~1인 1회~~	~~2,000원~~	
라. 야외공연장	1회 2시간	20,000원	
마. 청소년 전용공간		무료	일반인 사용 불가능

2.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일반인 기준)

시설구분	기 준	사용료	비고
다목적홀	1회 2시간	20,000원	~~- 일반인 경우~~ - 2시간을 초과할 경우 1시간당 5,000원 가산

3.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가. 청소년수련시설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기준</th><th>금 액</th><th>비고</th></tr>
<tr><td rowspan="2">1) 숙박비
(1인1일)</td><td colspan="3">청소년</td><td>6,000원</td><td rowspan="8">가) 1박 기준
(1) 그날 18:00~다음날 09:00
(2) 식비, 시설이용료 및 수련활동비는 별도계산
나) 이용시간 구분
(1) 오전: 09:00~12:00
(2) 오후: 13:00~17:00
(3) 야간: 18:00~22:00
다) 당초 허가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1) 30분 미만: 기준금액의 50퍼센트 ~~추징~~추가 부담
(2) 30분 이상~1시간 이내: 기준금액의 100퍼센트 ~~추징~~추가 부담
(3) 1시간 이상 초과: 매시간 기준금액의 100퍼센트 ~~추징~~추가 부담
라) 강당 냉난방시설: 1시간 초과 사용시 10,000원씩 추가 부담
마) 그 밖에 부대시설 및 행사기기 등의 사용료는 수련원의 내부규정에 따른다.</td></tr>
<tr><td colspan="3">일 반</td><td>9,000원</td></tr>
<tr><td rowspan="3">2) 강 당</td><td rowspan="3">공 연
행 사</td><td>오전</td><td>70,000원</td></tr>
<tr><td>오후</td><td>100,000원</td></tr>
<tr><td>야간</td><td>100,000원</td></tr>
<tr><td rowspan="3">3) 세미나실</td><td rowspan="3">행 사
교 육</td><td>오전</td><td>40,000원</td></tr>
<tr><td>오후</td><td>50,000원</td></tr>
<tr><td>야간</td><td>50,000원</td></tr>
<tr><td rowspan="2">4) 운 동 장</td><td rowspan="2">1일</td><td>경 기</td><td rowspan="2">1회</td><td>50,000원</td></tr>
<tr><td>경 기 외</td><td>100,000원</td></tr>
<tr><td colspan="3">~~수련활동지도료~~</td><td>~~1회 1인 기준~~</td><td>~~4,000원~~</td><td></td></tr>
</table>

부가세는 별도임

나.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구 분		금 액		비고
		개 인	단 체 (20명 이상)	
1) 입장료	어른	3,000원	2,500원	20세~64세
	청소년 및 어린이	2,000원	1,500원	7세~19세
2) 체험료	~~4D 영상관~~	~~2,000원~~	~~2,000원~~	
	~~가변중력체험~~	~~2,000원~~	~~2,000원~~	
	~~월면걷기체험~~	~~2,000원~~	~~2,000원~~	
	~~평행감각체험~~	~~2,000원~~	~~2,000원~~	
	체험기구 당	2,000원	2,000원	

다. 거창 국민여가캠핑장

1) "성수기"란 7. 20. ~ 8. 20.까지를 말한다.

2) "주말"이란 성수기를 제외한 주말(금요일·토요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휴일을 말한다.

3) "주중"이란 성수기와 비수기주말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구분	규 격	요 금			
		주중	주말	성수기	초 과 이 용
캐빈하우스 (4동)	복층, 기준인원 5명, 최대인원 6명	80,000원	100,000원	140,000원	1) 시간당 10,000원 2) 추가 1인당 10,000원
방갈로 (3동)	단층, 기준인원 3명, 최대인원 4명	60,000원	80,000원	120,000원	1) 시간당 10,000원 2) 추가 1인당 10,000원
전기데크 (9개소)	5미터×5미터, 6인용 ~~추가1인당 3,000원~~	25,000원	30,000원	30,000원	1) 시간당 3,000원 2) 추가 1인당 3,000원
일반데크 (5개소)	5미터×5미터, 6인용 ~~추가1인당 3,000원~~	15,000원	20,000원	20,000원	1) 시간당 3,000원 2) 추가 1인당 3,000원

가) 장비(텐트, 코펠 등)임대는 별도 계산한다.

나) 부가세는 별도임

다) 아동의 경우 36개월 이상부터 1인 요금 부과

[별표 3]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 감면율(제11조제1항 관련)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월성우주창의과학관에 한정한다.)

감 면 대 상	감 면 율 (사용료에 대한 백분율)
1.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청소년관련 행사	100분의 100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00분의 50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행안부국가보훈처)에 따라 국가보훈법에 따른 유공자 모두 열거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4. 청소년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이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	

개인의 경우 현장에서 증명서류 직접확인, 국가·군·단체의 경우는 감면신청서 첨부로 감면

[별표 4]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11조제2항 관련)

반환 사유	반환 기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월성청소년수련원,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국민여가캠핑장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전액 반환
2.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3. 사용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사용자가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70퍼센트 반환
5. 사용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80퍼센트 반환	50퍼센트 반환
6. 사용일 그날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50퍼센트 반환	반환하지 않음

가. 월성우주창의과학관의 반환기준은 수련시설과 같이 예약시에 한정함

나. 반환기준은 *00시*로 한다.

다. 반환은 7일 이내로 한다.

관련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85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교류활동"이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문화활동"이란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6. "청소년수련거리"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7.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숙박·야영하거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
8.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으로서 실시하는 날에 끝나거나 숙박 없이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①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금지행위)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청소년의 수련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2. 청소년활동이 아닌 용도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련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행위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①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으로부터 수련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①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시설 이용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1. 법인·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하는 경우
2.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개별적인 숙박·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4. 해당 수련시설에 설치된 관리실·사무실 등을 청 소년단체의 활동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
5.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이용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 5. 19.>[시행일 : 2020. 11. 20.] 제31조

제32조(청소년이용시설) ① 제10조제2호의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은 그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그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12조(수련시설의 이용) **법 제21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란 수련시설을 청소년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7조(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
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과학관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4.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수목원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
8.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둔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청소년활동과 관련되어 설치된 시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중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설치·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청소년이용권장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청소년이용시설에 우선하여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신청·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0. 6. 12.] [여성가족부령 제151호, 2020. 6. 12., 일부개정]

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 ①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 범위"란 해당 수련시설을 이용한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가 그 수련시설 연간이용가능인원 수의 100분의 40 이내인 범위를 말하되,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수련시설을 이용한 경우 그 가족은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전년도의 외국인 이용자가 연간 5만명 이상인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내인 범위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란 **청소년 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일에 한하는 일시적인 집회에의 사용
2.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에서 생활관 또는 숙박실 외의 부대·편익시설 등의 사용
3.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및 청소년특화시설에서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의 사용 [전문개정 2014.7.21.]

거창군 공고 제2020 - 1128호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196호선, 주차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거창군 고시 제2020-50호(2020. 04. 29.)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 : 소로2-196호선, 주차장) 사업이 완료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2020. 8. 24.

거 창 군 수

1.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 마상리

2.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비고
		읍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2-196호선)	가조	수월	소로	2	196	88.5	8		가조면 수월리 449-11 ~ 가조면 마상리 9-2	경고 제103호 (1995.05.12.)	
	주차장	가조	수월						2,065			
	화장실 (부대시설)	가조	수월							수월리 449-11 (주차장 부지내 설치)	-	

3.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성 명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4.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보건소 공고 제2020-19호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예외지원 기준을 일부 삭제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출산가정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2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 제2호 일부 삭제

○ 제2조 2호 및'별표'삭제

- 2020. 7. 1.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 확대

┌ 기본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120% 이하

└ 예외지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40% 이하

나. 제2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 제2호 지원범위 추가

○ 지원범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에 따른 본인 부담금의 100분의 50 지원. 다만, 최대 60만원 한도 지원

4. **입법예고기간 :** 2020. 8. 24. ~ 2020. 9. 13.(20일간)

5.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붙임

6.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9. 13.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0142 경남 거창군 거함대로 3079 거창군보건소 보건민원담당(전화 055-940-8363, 팩스 055-940-8399 또는 메일 lily91@korea.kr)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모두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보건소 보건민원담당(전화 055-940-83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시행규칙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2]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경상남도 예외지원 산모
2. 지원범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50 지원. 다만, 최대 60만원 한도 지원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이고, 지원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경상남도 예외지원 산모 2. 세대기준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중위소득”이라 한다) 첫째아 100퍼센트 초과 120퍼센트 이하 산모	제2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경상남도 예외지원 산모 2. 지원범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50 지원. 다만, 최대 60만원 한도 지원

[별표] <삭 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외지원 기준(제2조 관련)

<table>
<tr><th>태아
유형</th><th colspan="2">출산순위</th><th>소득구분</th><th>지원금액</th></tr>
<tr><td rowspan="3">단태아</td><td colspan="2">첫째아</td><td rowspan="2">중위소득 100퍼센트 초과
120퍼센트 이하</td><td>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정부지원금 단축형·
표준형에 따라 지원</td></tr>
<tr><td colspan="2">둘째아</td><td>단축형 : 30만원
표준형·연장형 : 40만원</td></tr>
<tr><td colspan="2">셋째아 이상</td><td>중위소득 100퍼센트 초과</td><td>단축형 : 30만원
표준형·연장형 : 50만원</td></tr>
<tr><td rowspan="3">다태아</td><td rowspan="2">쌍태아</td><td>둘째아</td><td rowspan="3">중위소득 100퍼센트 초과</td><td>40만원</td></tr>
<tr><td>셋째아 이상</td><td>50만원</td></tr>
<tr><td colspan="2">삼태아 이상</td><td>60만원</td></tr>
</table>

1. “단축형·표준형·연장형”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기간을 말한다.
2. 출산 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를 말한다.
   가. 첫 출산이 쌍태아인 경우: 둘째아 해당
   나. 단태아 출산 후 쌍태아 출산하거나 쌍태아 출산 후 단태아 출산한 경우: 셋째아 이상 해당

[별지 제1호서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table>
<tr><td>서비스 이용자
성 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d>성별</td><td></td></tr>
<tr><td rowspan="2">주 소</td><td colspan="3" rowspan="2"></td><td>연 락 처</td><td colspan="3"></td></tr>
<tr><td>서비스
기간</td><td colspan="3"></td></tr>
<tr><td>출 산 일</td><td colspan="3">년 월 일</td><td>지원유형</td><td colspan="3">☐ 소득기준 이하
☐ 예외지원대상</td></tr>
<tr><td>태아유형</td><td colspan="3"></td><td>출산순위</td><td colspan="3">☐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td></tr>
<tr><td>지원금액</td><td colspan="2">원</td><td>은행명/
예금주</td><td></td><td>계좌
번호</td><td colspan="2"></td></tr>
</table>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2항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 부담금을 지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산모와의 관계 :

거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산모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2. 출산 증명서류(의사소견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3.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4. 산모통장사본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서

건강관리사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민등록 주소지			연 락 처	
이용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민등록 주소지			연 락 처	
제공 기관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소 재 지			전화번호	
은행명		계좌 번호		예 금 주	
지원신청 기간	20 년 월 일 ~ 년 월 일(총일수: 일)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 이용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제공기관 대표 (인)

거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교통비 지원 청구서 1부 2. 교통비 지원 내역서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의 경우) 4. 건강관리사 수료증 사본 1부(최초 1회만) 5. 건강관리사 통장 사본 1부 6. (건강관리사)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7. (건강관리사)주민등록등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비보조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지원 대상여부( )
2. 이용자와 제공기관(건강관리사)간 거리 확인(포털의 지도상 최단거리 적용)
   (킬로미터)
3. 전자바우처 시스템 상의 제공일수 확인(일)
   확인일: 확인자: (인)

[별지 제3호서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대장

연번	신청일	산모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출산일	지원기간	지원금액	환수일자 및 사유

[별지 제4호서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대장

연번	신청일	신 청 기 관					산모 성명	출산일	지원기간	지원일수	지원금액	환수일자 및 사유
		기 관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건강관리사 성명	건강관리사 연락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3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매년 공표되는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포함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정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이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이라 한다)발급 대상자이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본지원 대상 가정의 산모(이하 “기본지원 대상”이라 한다)가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 대상자이면서 기본지원 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예산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